

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

I

추진방향 및 2024학년도 주요성과

- 추진방향**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, 관련 법령*에 근거하여 학자금대출 시행^{'09년~} 및 지속 확대
*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

< 주요 추진 경과 >

년도	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(ICL)	일반 상환 학자금대출
'09년		한국장학재단 설립, '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' 시행
'10년	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정('10.1) ICL 도입·시행 (소득 7구간 이하 대상)	
'14년	제1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('14.7.~'15.5.) ※ '09. 2학기 이전 대출 (평균7.0%) → 일반상환대출 또는 ICL(2.9%)	
'15년	ICL 자격 소득 8구간까지 확대	
'20년	제2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('20.4.~'21.3.)	
'22년	ICL 지원대상 대학원생(일반대학원·전문기술석사)까지 확대	
'23년	ICL 지원대상 모든 유형의 대학원으로 확대	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도입

- 대출지원** 총 39.7만명에게 약 2.11조원의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지원,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1.7%의 대출금리 적용
- ICL확대** 9구간 이하를^{현행}, 8구간 이하 ICL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, 이자 면제의 대상 등을 확대하며, 연체금률을 인하하여^{3%→2%} 부담 경감

< 주요 개선 사항 >

대상	구 분	2023년		2024년도 (24.7월 시행)
		등록금	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	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단,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*는 지원 ⇒ * 부모 사망, 파산, 개인화생, 실직, 폐업/ 본인 파산, 개인회생, 폐업, 청소년쉼터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경우 등
지원 대상	학부생	생활비	재학기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	⇒ 재학기간 +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
이자 면제	기초· 차상위 다자녀	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	재학기간	⇒ 재학기간 +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
	기준중위 소득 이하 (1~5구간)	등록금 생활비	이자면제 대상 아님 4구간 이하(5구간 제외),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	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⇒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
연체	연체(가산금)	연체금 가산금	고지금액의 3% 매월 고지금액의 1.2%	고지금액의 2% ('24.1월 시행) ⇒ 매월 고지금액의 0.5% ('24.1월 시행)

- 채무불이행**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학자금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기간 확대^{2년 → 3년}

- ❖ 25학년도 1학기 주요 추진 내용 반영하여 「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」 및 「2025학년도 학자금 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·고시」 개정

- **대출금리** 불안정한 경제 여건 속에서 경제 활성화 지원 정부 기조 및 경제적 취약 계층인 청년층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금리인 1.7%로 동결

< 최근 학자금대출 금리 변동 추이 >

'18년	'19년	'20.1학기	'20.2학기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년 1학기
2.2%	2.0%	1.85%		1.7%				1.7%

- **ICL 상환기준소득**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ICL 상환기준 소득을 2,679만 원으로 전년대비 172만 원↑, 공제 후 1,898만 원 인상

< 연도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현황>

연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
상환기준소득 (총급여기준)	2,013만원	2,080만원	2,174만원	2,280만원	2,394만원	2,525만원	2,679만원

- **학자금지원 제한대학** '대학평가체제 개편방안'^{23.3}에 따라, 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10개교^{일부제한1교, 전부제한9교} 확정

<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결과 >

유형	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가능	국가장학금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한 (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지원)	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제한
개요	• 인증 & 재정건전대학 • 한시적인증유예&재정건전대학 • 자발적구조개선이행통과& 한시적인증유예또는인증	• 인증 & 경영위기대학	• 미인증 대학 •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&경영위기
합계	303교	1교 국제대	9교 대구예술대, 중앙승가대, 신경주대, 제주국제대, 한일장신대, 광양보건대, 나주대, 부산예술대, 용지세무대

- **가구원 기준·자격** 학년도·학기별로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달라지는 상황 반영, 학기별 기준 및 자격 내용 포괄하도록 관련 고시에 명시
※ 가구원 기준, 자격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학기별 한국장학재단의 기초생활 수급자·차상위계층 인정 범위를 따름

- **학점은행제** 한국장학재단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자금 대출 지원 가능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177개 지정^{추가선정 9개, 지정해제 20개}

<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현황>

구분	2024학년도			2025학년도		
	대학부설	대학부설 외	총계	대학부설	대학부설 외	총계
기관 수	88	99	187	83(△5)	94(△5)	177(△10)

III

향후 일정

- ('24. 12월 말) 관련 고시 개정
 - ※ 「2025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」
 - 대출금리, 기간, 자격요건, 상환기준소득, 제한대학 등 주요 변동 사항 반영
 - 「2025학년도 학자금 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·고시」
 -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학자금 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·고시
- ('25. 1. 2.) '25학년도 1학기 대출 금리 및 대출 신청·접수 관련 보도
- ('25. 1월~5월) '25학년도 1학기 대출 신청
 - 등록금 대출 (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포함) 신청 1.3.(금)~4.24.(목)
 - ※ 분납연계대출 1.3.(금)~5.20.(화)
 - 생활비 대출 신청 1.3.(금)~5.20.(화)

붙임 1

학자금대출 제도 비교

※ '25학년도 1학기 기준

구분	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		일반 상환 학자금대출							
대상	·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(학점인정 교육기관, 외국대학 제외)		·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, 학점인정 교육기관 학습자 (외국대학 제외)							
연령	학부	· 만 35세 이하 (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)		공통						
	대학원	· 만 40세 이하								
신청 성적 대상	학부	· 신입생 : 제한 없음 · 재학생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은 적용 예외 ※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		학부						
	대학원	· 제한 없음		대학원						
				학점 응행제						
소득 기준	학부	· 등록금: 학자금 지원 9구간이내 · 생활비: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※ 단,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 (보호 아동 포함)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		공통						
	대학원	·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								
신용 요건	공통	· 제한 없음 (금융채무불이행자, 저신용자 가능)		공통						
대출금리	· 변동금리(연 1.70%)		· 고정금리(연 1.70%)							
	학부	· 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(한도 없음) · 생활비 : 연 400만원(학기당 200만원)		학부						
대출조건	대학원	· 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총 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석사 과정</td> <td>4천만원</td> </tr> <tr> <td>전문/의·치의·한의계열</td> <td>6천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* 석·박사 통합과정 포함 · 생활비 : 연 400만원(학기당 200만원)		구분	총 한도	석사 과정	4천만원	전문/의·치의·한의계열	6천만원	대학원
구분	총 한도									
석사 과정	4천만원									
전문/의·치의·한의계열	6천만원									
				학점 응행제						
대출기간	·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('25년 기준 연소득 2,851만 원)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,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·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(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)		학부 대학원	학점 응행제						
			· 최장 20년(거치기간 10년 + 상환기간 10년) 이내에서 선택 · 최장 18년(거치기간 8년 + 상환기간 10년) 이내에서 선택							
상환방법	· 의무적 상환: 소득에 따라 상환(국세청) ※ 자발적 상환(재단) 가능(수수료 없음)		·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(월 분할상환 방식) ※ 중도상환 가능(수수료 없음)							

붙임 2

대출 업무 절차 (대학(원) 대출 기준)

대출단계	재 단	학 생 / 가구원	대 학
단계별	업무 내용		
대출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홈페이지 정비 - 실행 전산 시험 가동 - 업무처리기준(안) 작성 - 대출 금리 고시 - 대출 상담 <p>(학생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서명 수단 발급 -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<p>(가구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서명 수단 발급 -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		
대출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자 확인 - 제출서류 확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융교육 이수 - 대출신청서 작성 -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		
신청 및 서류 완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출서류 확인·처리 - 오제출, 미제출시 통보 - 서류 완료 통보 -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요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필요시) 증빙서류 제출 -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신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출서류 확인·처리 - 대상자 확인 (학적정보 업로드) - 수납원장 업로드 - 분납정보 업로드 (대상자 존재 시) 		
대출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심사진행 (신용도판단정보, 연체정보, 성적, 연령, 대출한도, 중복 지원정보, 대출제한대학 등) - 거절사유 확인 -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-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(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, 연체거절, 성적거절, 연령거절, 중복지원정보 보유자, 대출 제한대학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자 확인 (학적정보 업로드) - 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 특별승인 기준심사 및 추천 처리 		
대출승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출승인 통보 - 수납원장 확인 - 수납일정 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- 대출금 지급신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납원장 추가 업로드 - 분납정보 추가 업로드 - 기등록자 관리 		
대출실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계좌 잔액 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출조건 등 입력 - 대출 약정 체결(핵심설명서 제공) - 대출 실행 완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- 추가 등록일정 입력 		
사후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제도 운영 - 미성년자 및 '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대출정보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- 재학생 생활비 우선실행자 기등록 정보 업로드 -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- 등록금 반환 (신(편)입생 추가대출 등) 		

* 단, 취업후 학자금대출 신청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정보제공 동의 필요

*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은 위 절차 중 '일반상환학자금대출' 절차 준용 처리

붙임 3**학자금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사항**

구 분	주요 제도 개선 사항
'09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미성년자 친권자 동의 절차 개선(부모 공인인증서 이용 친권자 동의시스템 마련)
'10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(학부생 대상) ■ 학자금 대출자 성년의제 특례법안 신설
'11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제 신설(전체 평점 B학점 대상 대출 허용) ■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시행(23개 대학)
'12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재학생 성적기준 완화 : B학점→C학점 ■ 신입생군 성적 기준 폐지 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다자녀 가정 범위 확대 : 셋째 이상 폐지(다자녀 가정 학생 모두 가능)
'13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취업후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(학기당 100만 원→150만 원) ■ 군복무자 이자 면제 시행
'14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(기준 최소 7.8% 금리를 2.9%로 인하)
'15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소득분위 8구간까지 확대 ■ 학업 지속자에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(만 60세 미만) ■ 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연령 제한 완화(만 45세 이하)
'16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출제도 선택제(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권 부여) 도입 ■ 재학생 등록예정자에 대한 생활비 우선 대출 지원
'17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 ICL 연령 제한 완화(만 35세 → 만 45세)
'18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(학기당 100만 원→150만 원) ■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(C학점 이상 → 폐지) ■ 취업후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변경(소득 3구간 이하 → 소득 4구간 이하)
'19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특별추천제도→특별승인제도로 변경 및 사고·질병 예외 기준 적용 ■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(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부모 → 학부 신입생인 성년자의 부모)
'20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역배상금을 부과체계 개편(단일금리 방식 → 대출금리 + 연체가산금리 방식) ■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('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부모에게도 대출정보 안내) 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해외유학 신고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('약정서' 정구)

구 분	주요 제도 개선 사항
'21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제2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 ('09년 이전 대출자 대상) ■ 4구간 이하 학부생 ICL 의무화, 해외유학 연대보증 전면폐지 ■ 특별승인제도 완화 및 미성년자 부모통지 강화 ■ 사망·심신장애 채무자 학자금대출 감면 시행
'22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학원생 대상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(ICL) 도입(일반대학원, 전문기술석사) 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성적기준 폐지(C학점 이상 → 폐지, 이수학점 기준은 유지) 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성적기준 개선((기준) 이수학점 무관, 백분위 성적 60점 이상 (D학점) → (개선) 이수학점 6학점 이상 적용 도입) ■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원 박사과정 등록금 한도 확대 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저소득층(기초·차상위)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 재학 중 이자면제 ■ 파산 면책자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면책 허용 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 지정·해제 기준 변경 ■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채무조정 시행(일반상환학자금대출,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)
'23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도입 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(ICL) 모든 유형의 대학원에 지원(특수·전문대학원 포함) ■ 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(ICL) 지원 및 생활비대출 무이자 지원
'24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생활비대출 연간 공급 한도 확대(상품 무관, 학기당 150만 원 → 200만 원) ■ 다학기제 대학(학과) 대상 학자금대출 신규 공급(일반상환, 등록금 한정) ■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복수기관(2개) 학자금대출 지원 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(ICL) 학자금지원 9구간까지 지원 확대(등록금 기준, 생활비는 8구간 유지하되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가능) 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(ICL) 이자면제 대상 확대(기초·차상위·다자녀, 재학기간 → 재학기간+의무상환 발생 전까지 / 기준 중위소득 이하,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발생 전까지 이자면제 지원)
'25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(ICL) 연체금률(3% → 2%), 연체가산금률(1.2% → 0.5%) 인하